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
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
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로 보하던 합동군사대학교 총장, 육군 보병·포병 등 병과학교장을 2급 이상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합동군사대학교령」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생 략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관련 협의 예정

합동군사대학교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합동군사대학교령」의 개정)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장교”를 “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”로 한다.

제2조(「육군보병학교령」의 개정) 육군보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(將星級)장교”를 “(將星級)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”로 한다.

제3조(「육군포병학교령」의 개정) 육군포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(將星級)장교”를 “(將星級)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”로 한다.

제4조(「육군기계화학교령」의 개정) 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장교”를 “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”로 한다.

제5조(「육군공병학교령」의 개정) 육군공병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장교”를 “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”로 한다.

제6조(「육군정보학교령」의 개정) 육군정보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장교”를 “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”로 한다.

제7조(「육군정보통신학교령」의 개정) 육군정보통신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장교”를 “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”로 한다.

제8조(「육군종합군수학교령」의 개정) 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장교”를 “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”로 한다.

제9조(「육군종합행정학교령」의 개정)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(將星級)장교”를 “(將星級)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총장)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, 총장은 장성급(將 星級) <u>장교</u> 로 보(補)한다.	제3조(총장) ① ----- ----- --- <u>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</u> <u>은</u>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육군보병학교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교장) ① (생 략)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 級)장교로 보한다. ③ (생 략)	제2조(교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(<u>將星 級</u>)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 으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
육군포병학교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교장) ① (생 략)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 級)장교로 보한다.	제2조(교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(<u>將星</u> 級)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 으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육군기계화학교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교장의 임명과 직무) ① (생략)	제2조(교장의 임명과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<u>장교</u> 로 보(補)한다.	② ----- --- <u>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</u> <u>은</u>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육군공병학교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교장) ① (생략)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<u>장교</u> 로 보한다. ③ (생략)	제2조(교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 <u>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</u> <u>은</u>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
육군정보학교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교장) ① (생 략)	제2조(교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<u>장교</u> 로 보한다.	②----- --- <u>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</u> <u>으</u> -----.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육군정보통신학교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교장) ① (생 략)	제2조(교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 級) <u>장교</u> 로 보한다.	②----- --- <u>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</u> <u>으</u> -----.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육군종합군수학교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교장의 임명과 직무) ① (생략)	제2조(교장의 임명과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級) <u>장교</u> 로 보(補)한다.	② ----- --- <u>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</u> <u>은</u>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교장) ① (생 략)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(將星 級)장교로 보한다. ③ (생 략)	제2조(교장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(<u>將星</u> 級)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 으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국군조직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6562